
**사천바다케이블카 에스컬레이터
핸드레일 교체 규격서**

2023. 10.

사천시시설관리공단

I. 설 계 설 명 서

1. 공 사 명 : 사천바다케이블카 에스컬레이터 핸드레일 교체 공사
2. 위 치 : 경상남도 사천시 사천대로 18(대방정류장)
3. 목 적 : 에스컬레이터 핸드레일 손상으로 인한 승강기 이용객 안전 사고 예방 및 원활한 설비 유지·관리를 위해 옥외 에스컬레이터 2대 좌·우측(총 4개소)의 핸드레일을 교체하고자 함.
4. 면허자격 : 「승강기안전관리법」 제39조에 승강기 유지관리업 등록 업체
5. 공사 내용 : 옥외 에스컬레이터 2대 좌·우측(총 4개소) 핸드레일 교체
※ 반드시 현장확인, 실측 및 규격 확인 후 주문제작 할 것
6. 설치기간 : 착공일로부터 25일
7. 공사예정 공정표

공 정 \ 일 정	5일	10일	15일	20일	25일	비고
현장조사 및 자재준비						
핸드레일 교체						
시 운 전						

8. 하자보증기간 : 준공 후 3년

II. 일 반 시 방 서

1. 적용 범위

- 가. 본 시방서는 「사천바다케이블카 에스컬레이터 핸드레일 교체 공사」에 대하여 적용한다.
- 나. 본 공사는 승강기 안전관리법, 승강기안전부품 안전기준 및 승강기 안전기준, 승강기안전부품 및 승강기의 안전인증에 관한 운영규정, 산업안전보건법,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등의 관련 법령을 준수 하여야 한다.
- 다. 본 시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공사계약일반조건 및 공사계약특수조건 등 계약조건에 따른다.

2. 용어의 정의

- 가. 발주부서
발주부서라 함은 해당 공사의 시행 주체인 사천시시설관리공단 케이블카운영팀을 말한다.
- 나. 계약상대자
계약상대자라 함은 발주부서로부터 공사를 도급받아 공사를 시행하는 계약자를 말한다.

3. 착공 시 제출서류

- 가. 계약상대자는 계약 체결 후 아래 내용을 포함한 착공 관련 서류 2부를 발주부서에 제출하여야 하며, 해당 공사가 정해진 기한 내 완료될 수 있도록 계약 이행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.
 - 1) 착공 신고서
 - 2) 현장대리인계
 - 3) 현장대리인 경력증명서
 - 4) 작업자의 재직증명서 및 관련 자격·면허 사본
 - 5)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건설업등록증 사본
 - 6) 예정 공정표
 - 7) 계약금액에 따른 산출내역서
 - 8) 고용·산재보험 가입 확인서

- 9) 안전보건 확보 계획서
- 10) 산업재해 예방서약서
- 11) 기타 발주부서에서 필요로 하는 자료

나. 기 제출된 “가” 항의 내용 중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유 및 증빙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.

4. 현장대리인

- 가. 현장대리인은 건설산업기본법, 건설기술 진흥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현장대리인 배치 기준에 적합한 자를 선임하여 발주부서의 확인 후 공사 현장에 배치하여야 하고 발주부서가 판단하였을 때 본 공사 시행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인력에 대해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, 계약 상대방은 즉시 해당 인원을 교체하여야 한다.
- 나. 현장대리인은 공사와 관련하여 현장 및 안전보건 관리 등 업무(관계 서류의 작성, 시공, 각종 검사의 입회 및 시운전, 작업장 안전보건 관리 등)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.
- 다. 현장대리인은 공사 중 현장을 떠나지 말아야 하며, 부득이한 경우 발주부서와 사전 협의를 하여야 한다.
- 라. 본 공사의 현장대리인을 교체할 경우 교체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.

5. 현장조사

계약상대자는 계약 후 현장을 사전에 답사하여 자재 규격 및 치수를 확인하고 정확한 설치가 될 수 있도록 하며, 당초와 변경이 있을 때는 발주부서의 확인을 받은 후 변경 사항을 반영하여야 한다.

6. 단 위

길이, 중량, 용적 및 기타 단위는 미터법(M.K.S)으로 표시함을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한 경우 발주부서와 협의 조정 할 수 있다

7. 계약상대자의 의무

- 가. 계약상대자는 계약 체결 후 반드시 현장을 확인 점검하고 발주부서가 지정한 기일 내에 예정공정표를 발주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.

- 나. 계약상대자는 공사 진행 사항(공정 상태), 자재 사용 내역을 작업일지에 기록하여 발주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.
- 다. 계약상대자는 관련 법규 및 규정에 따라 시험 및 검사기준에 적합하게 공사를 시행하여야 하며, 준공 후 에스컬레이터 이용자 안전과 성능에 이상이 없어야 한다.
- 라. 계약상대자는 시방서 및 관련 법규에 따라 작업을 수행하였더라도 자재 불량 또는 설치 상의 오류로 하자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 계약상대자는 무상으로 이를 보완하여야 한다.
- 마. 계약상대자는 승강기 검사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.

8. 안전보건 확보 의무사항

- 가. 계약상대자는 본 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안전보건 관계 법령 및 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사항을 반드시 이행하고,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우리 공단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.
- 나. 계약상대자의 귀책 사유로 인하여 사고 발생 시 이에 대한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진다.
- 다. 계약상대자는 종사자 및 이용자 등으로부터 유해·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·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히 조치하고, 우리 공단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 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한다.
- 라.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즉시 보고 및 사고 처리하여야 한다.

9. 안전 관리

- 가. 계약상대자는 노동법 등 기타 관계 법령에 따라 관리를 행하며 다음 사항을 준수한다.
 - 1) 노무자 기타 출입 감시, 풍기 및 위생단속
 - 2) 화재, 도난, 소음방지, 위험물 및 그 위치의 표시, 기타 사고방지에 대한 단속
 - 3) 시공 자재 및 기기의 정비와 관리, 공사장의 청소
 - 4) 교체공사 작업장 근처 가설 울타리, 차단봉 등 설치 및 안내 문구 부착 철저

5) 작업장 주변의 보안 조치, 현장 인원의 안전 장비, 재해 예방시설 및 유사시 대책 마련

- 나. 계약자는 공사 중 발생한 안전 및 재해 사고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지며 당사에 손해를 입혔을 경우에는 즉시 변상하여야 한다.
- 다. 계약상대자는 작업 및 점검 전 현장대리인으로 하여금 사전 안전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여야 하며, 작업장 내에서는 작업자의 안전에 필요한 개인보호장구(안전모, 안전화 등)를 필히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.
- 라. 계약상대자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작업 구간 내에 관계자 외 출입을 제한하는 차단봉 등 보호 시설물을 설치하여야 한다.
- 마. 계약상대자는 공사 도중 또는 공사가 완료된 부분의 각종 기구류 및 공작물의 오손, 파손, 변질, 분실 등의 방지하기 위하여 철저한 보안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.
- 바. 작업 종료 후 현장 정리를 철저히 하여야 하며, 이를 준수하지 못해 발생하는 모든 안전사고 및 민원 관계에 대해서는 계약상대자가 일체의 책임을 진다.
- 사. 작업상 화기(용접 등) 등을 취급할 경우에는 반드시 안전작업허가서를 작성하여 발주부서의 승인을 득한 후 작업을 진행하여야 하며, 작업 전 작업 구역 주변에 소화기를 비치하여야 한다. 특히 작업 중 또는 작업 후 화재 등의 안전 관리에 각별히 유의하여야 한다.

10. 사고 및 재해 방지 대책

- 가. 계약상대자는 안전 수칙을 준수하고 재해사고 방지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.
- 나. 계약상대자는 시공 도중 발생하기 쉬운 안전사고에 유의하여야 하며 안전 관리 수칙의 제반 이행사항을 충실히 지키도록 작업자에게 반복 교육을 시행하고, 위험도가 높은 작업을 할 경우에는 발주부서와 충분히 협의하여 안전 대책을 강구한 후 작업하여야 한다.
- 다. 계약상대자는 작업자가 행하는 모든 작업이 충분히 밝은 상태에서 시행하도록 하여야 한다.
- 라. 계약상대자는 사고 발생 시의 대책 및 관련기관(공단, 병원, 경찰서, 소방서 등)에의 연락 방법 등을 작업자에게 주지시켜야 한다.

11. 산재예방 협업시스템 협조 사항

- 가. 계약상대자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공단에서 운영하는 산재예방 협업시스템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.
- 나. 계약상대자(또는 현장대리인)는 착공 전 산업재해 예방 회의에 1회 이상 참여하여야 하며, 회의 일정은 상호 협의 하에 결정한다.
- 다. 계약상대자(또는 현장대리인)는 산업재해 예방 서약서 2부 중 1부를 발주부서에 제출하여야 하고, 1부는 계약상대자가 별도 보관한다.
- 라. 계약상대자(또는 현장대리인)는 본 공사를 수행함에 있어, 착공 전 위험성 평가를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실시하여 그 결과를 회의 실시일로부터 3일 이내에 발주부서에 제출하여야 하고 발주부서는 위험성 평가 결과 검토 후 필요시 보완 조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,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.

12. 공사의 시행

- 가. 계약상대자는 본 공사와 관련하여 상호 간에 긴밀한 연락과 협의로 공사 시행에 만전을 기하여야 하며, 계약상대자는 공사가 지연된다고 판단될 때에는 상세한 사유를 발주부서에 보고하고 공정 만회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.
- 나. 공사 진행 중 발생하는 민원에 대하여는 계약자의 책임 하에 공정 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조속히 수습, 해결하여야 한다.
- 다. 계약상대자가 불완전한 시공을 하거나 임의로 지연 또는 소홀히 한다고 판단될 때에는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단시킬 수 있으며 또한 발주부서와 협의하여 공사의 내용 및 방법을 변경할 수 있다.
- 라. 계약상대자는 공사 시행 전에 공종별 주요 사항에 대하여 발주부서와 충분히 협의 후 시행하여야 하며 임의 시공에 따른 하자 및 시설물에 대한 손상은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지체 없이 시정하여야 한다.
- 마. 공사에 필요한 조사 측량은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행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발주부서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- 바. 계약상대자는 공사 시행 전 운영 중인 에스컬레이터 이상 유무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하며, 교체 후 장애 발생 시 계약상대자 책임으로 보수하여야 한다.
- 사. 계약상대자는 관련 법규 및 규정에 따라 시험 및 검사기준에 적합하게 공사를 시행하여야 하고 공사 준공 후 에스컬레이터 이용자 안

전과 성능에 이상이 없어야 한다.

- 아. 계약상대자는 착공부터 준공까지 공사와 관련되는 모든 사항에 대하여 계약상대자 책임 하에 빠짐없이 기록하고 사진 촬영하여 발주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.
- 자. 공사 완료 후 작업 구간에 대한 정리, 청소를 깨끗이 하여야 한다.

13. 시공의 확인 및 입회 검사

계약상대자는 다음 사항에 대하여는 발주부서의 확인 및 입회 검사를 받은 후 다음 공정을 시행하여야 한다.

- 가. 준공 완료 후 외부에서 점검이 곤란한 작업
- 나. 기타 발주부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14. 사용 자재 및 검사

- 가. 본 공사에 사용되는 자재는 한국승강기안전공단으로부터 승강기 부품 안전 인증을 취득한 제품 또는 한국산업표준 KS B 6852(에스컬레이터용 핸드레일) 규정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하며, 안전성과 정밀성이 확보되어야 한다.
- 나. 필요시 발주부서는 계약자가 반입한 재료에 대하여 이상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공인기관에 검사 및 시험을 의뢰 할 수 있으며,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자가 부담하여야 한다.
- 다. 계약상대자가 구입하여 사용하는 자재는 신품이어야 하며, 공사 진행에 필요한 자재 및 공구는 사전에 발주부서의 확인 후 사용하여야 한다.
- 라. 반입 자재의 검사 결과, 불합격된 자재는 즉시 반출하여야 하며 발주부서에 확인을 받지 않고 사용한 자재에 대하여는 발주부서의 지시에 따라 철거, 재시공하여야 한다.

15. 자재 운반 처리

- 가. 공사에 사용되는 자재 및 공구 등은 지상으로 끌거나 던지는 사례가 없도록 하고 시설물에 대한 손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운반하여야 한다.
- 나. 자재는 발주부서의 지시에 따라 파손되지 않도록 포장하여 운반하여야 한다.

다. 중량물 운반 시에는 특히 안전에 주의하여야 하며 타 시설물에 파손이 없도록 하고 타 시설물 손괴 시 이에 대한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져야 한다.

16. 공사 기간의 연기 및 중지

공사 시행 중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공사를 중지 또는 연기할 수 있다.

가. 관련 공정의 공사 지연으로 시공이 불가할 경우

나. 기타 공단 사정으로 공사가 지연될 경우

17. 하자기간

가. 본 시방서에 의하여 해당 공사의 보증기간은 준공일 기준으로 하며, 하자담보책임기간은 3년간으로 한다.

나. 부품 교체와 관련한 모든 장애에 대해서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전량 무상 수리·교체하여야 한다.

다. 하자담보책임기간 내 발생한 설계·재료 및 제작 불량 등 계약상대자의 귀책 사유로 발생한 고장에 대해서는 계약상대자가 모든 책임을 지며, 무상으로 수리·개조 또는 교체하여야 한다.

18. 준공 시 제출서류

가. 공사 준공은 본 설계도서 및 시방서에 정한 모든 과업을 완료하고 필요한 시험 및 현장 정리가 완료되었다고 발주부서가 인정하였을 때 준공된 것으로 본다.

나. 본 건이 완성되었을 때 계약상대자는 아래 내용을 포함한 준공 관련 서류 2부를 발주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.

- 1) 준공계
- 2) 납품 자재 사진 대장
- 3) 설치공정 사진 대장(동일 장소 또는 동일 방향에서 촬영한 전·중·후 사진)
- 4)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내역서
- 5) 고용·산재보험 완납 증명원
- 6) 납품 자재 공인 시험성적서 또는 제조사 시험성적서
- 7) 기타 발주부서에서 필요로 하는 자료

Ⅲ. 특 기 시 방 서

1. 적 용

본 시방서는 「사천바다케이블카 에스컬레이터 핸드레일 교체 공사」에 대해 적용한다.

2. 에스컬레이터 사양

제조사	수량(대)	설치위치	승강기 고유번호
에이엔티	2	사천바다케이블카 대방정류장	8805-205 8805-206

3. 자재 규격

품명	규격	합계(m)	길이(m)	내용
핸드레일	폴리우레탄/ 검정색(유광)	270.8	67.7	에스컬레이터 1호기(상행) 좌측
			67.7	에스컬레이터 1호기(상행) 우측
			67.7	에스컬레이터 2호기(하행) 좌측
			67.7	에스컬레이터 2호기(하행) 우측

4. 특기사항

- 가. 핸드레일은 한국승강기안전공단으로부터 승강기 부품 안전 인증을 취득한 제품 또는 한국산업표준 KS B 6852(에스컬레이터용 핸드레일) 규정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하며,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핸드레일과 동급 이상의 품질을 가진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.
- 나. 핸드레일은 옥외용 에스컬레이터에 적합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.
- 다. 핸드레일 색상은 검정색으로 하며 햇빛 등의 노출에 의한 색상 변화가 없어야 한다.
- 라. 핸드레일은 장기간 사용 시에도 변형이 없도록 스틸코드를 심재로 하고, 몸체와 커버는 물리적 특성이 뛰어난 폴리우레탄으로 구성된 것이어야 한다.

- 마. 핸드레일은 손에 쥐기 쉽도록 형상을 말발굽 모양으로 성형한 것으로서, 그 폭 및 두께는 길이 방향으로 균일하며, 상처, 굴곡, 변색 등의 사용상 유해한 결함이 없고, 자외선 등 야외 환경 조건에서 장기 사용에 견딜 수 있어야 한다.
- 바. 핸드레일 표면은 깨끗하고 광택을 가지며 긁힘, 균열, 흠, 굴곡, 오목, 얼룩 및 부수한 부분이 없어야 하며, 길이 방향 또는 폭 방향으로 포의 주름이 없어야 한다.
- 사. 핸드레일은 온·습도 변화에 따른 슬립 현상 등의 영향을 받지 않고, 사용 중 퇴색이 되지 않아야 한다.

5. 작업 준비

- 가. 계약상대자는 작업 구간 내에 관계자 외 출입을 제한하는 가설 울타리, 차단봉 등을 설치하여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.
- 나. 계약상대자는 작업 구간 주변에 작업 안내문을 설치하여야 하며, 작업 안내문에는 공사명, 주요 내용, 공사 기간, 시행처, 현장대리인 비상연락처, 대체경로 안내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.
- 다. 작업 안내문은 상, 하부 벽면 또는 그 근방에 각각 1매 이상 부착 또는 배치되어야 한다.
- 라. 계약상대자는 작업 중 시설물 파손 및 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바닥 보양을 충분히 하여야 한다.

6. 자재 납품

- 가. 계약상대자는 작업 전 현장에 방문하여 기존 설치된 핸드레일의 세부 규격(외면폭, 내면폭, 개구폭, 길이 등)을 실측하여야 하며, 실측 미실시 또는 실패로 인하여 발생하는 문제는 계약상대자가 책임을 진다.
- 나. 납품 자재는 사전에 발주부서의 확인을 받은 후 납품하여야 한다.

7. 자재 및 공구의 반입

- 가. 자재 반입 시 자재 파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, 반입 중 자재 파손 또는 자재 불량 시 신품으로 교체 후 재반입하여야 한다.
- 나. 현장에 반입되는 자재 및 공구는 사전에 발주부서와 협의한 후 반입하여야 하며, 작업에 필요한 자재 및 공구는 사전에 빠짐없이 준비

하여 작업 지연으로 인한 고객의 불편이 가중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.

- 다. 교체·보수작업을 위한 자재 및 공구 등의 현장 반입은 고객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시행하여야 하며, 보관이 필요한 때에는 통행과 업무에 지장이 없는 곳에 계약상대자 관리책임으로 안전하게 보관한다.
- 라. 자재의 반입에서 준공 시점까지 천장판이나 바닥 등 시설 전반에 손상이 발생치 않도록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적합한 안전 조치를 이행하고 작업을 수행하여야 하며, 시설의 손상이 발생된 때에는 즉시 계약상대자가 원상 복구한다.

8. 철거 및 운반

- 가. 핸드레일을 철거할 때에는 이동 및 관리가 원활한 형태로 견고하게 말아 정리하고, 철거품 등 폐기물은 발주부서가 지정하는 장소로 즉시 반출하여야 한다.
- 나. 폐 핸드레일 등 재사용이 곤란한 철거품은 통행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즉시 안전하게 반출하여 안전사고 및 민원을 예방해야 한다.
- 다. 철거품 운반 시에는 주요 부품에 기름이 묻은 상태로 기름 덩어리가 운반 중 바닥에 떨어지지 않도록 하며, 떨어진 경우 깨끗이 닦아야 한다.
- 라. 중량물을 운반할 때에는 운반자 및 통행인의 안전사고에 유의하여 안전하게 이동하여야 한다.
- 마. 자재 및 장비 운반 중 물적 또는 인적 피해가 발생하였을 때는 발주부서와 협의하여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원상복구 또는 보상해야 한다.
- 바. 운반 중 계단의 모서리나 기타 시설물의 파손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심하고 작업자 부주의로 파손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가 원상복구한다.

9. 자재 설치

- 가. 핸드레일 신품은 작업 중 굽힘이나 꺾이는 등 자재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.
- 나. 핸드레일 설치 시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에스컬레이터 관련 장치에 손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여 작업을 수행하여야 하며, 손상 등

이 발생할 시에는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.

- 다. 핸드레일 접합부는 한국산업표준 KS B 6852(에스컬레이터용 핸드레일)에서 규정한 품질과 성능을 보장하고 굴곡, 변색, 굽힘 등 결함이 발생하지 않도록 성형하고 특유의 광택을 유지한다.
- 라. 핸드레일 교체는 기존 시설물의 추가, 보완 및 변형 없이 에스컬레이터가 기존의 성능을 유지하면서 작동할 수 있도록 진행되어야 하며, 에스컬레이터의 원활한 작동을 위한 계약상대자는 각종 롤러 및 디딤판 등 관련부 조정을 시행하여야 한다.
- 마. 핸드레일 교체 후 계약상대자는 승강기 안전관리법, 승강기안전부품 안전기준 및 승강기 안전기준, 한국승강기안전공단 정기검사 기준 등에 적합하도록 관련 조치를 하여야 한다.

10. 청소

- 가. 계약상대자는 기존 핸드레일 분해 후 구동부, 가압롤러 등 관련부에 묻는 기름때와 이물질을 깨끗이 제거한 후 신품으로 교체를 진행하여야 한다.
- 나. 계약상대자는 핸드레일 교체 후 에스컬레이터 발판, 랜딩 플레이트 등 작업 공간의 오염된 부위를 깨끗하게 청소하여야 한다.

11. 점검 및 시운전

- 가. 계약상대자는 작업 종료 후 발주부서로부터 작업 종료 확인을 받아야 하며, 이후 자체 점검 자격자가 에스컬레이터 각 부분을 점검하여 이상이 없음을 확인하고 시운전을 진행하여야 한다.
- 나. 핸드레일은 핸드레일 구동롤러와 중심점이 일치하여야 하고 디딤판의 운행 속도와 동일하게 미끄럼 없이 구동되어야 한다.
- 다. 에스컬레이터 주행 중의 이상소음 발생, 발열, 레일 형상에 대한 변형, 내피의 이상 마모, 손상 등을 점검하여 이상이 없어야 한다.
- 라. 시운전은 발주부서 입회하에 시행하고, 기능 및 안전 등에 문제가 발생 시 즉시 신품으로 교체하여야 한다.
- 마. 시운전 중에는 관계자 외에 에스컬레이터를 이용할 수 없도록 통제하고 1시간 이상 충분히 시운전을 진행하여 이상 없음을 확인한다.
- 바. 시운전에 소요되는 장비와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.

IV.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안전평가

1. 목 적

세부 관리계획 수립을 통한 도급·용역·위탁관리 의무이행 준수

2. 근거

- 가. 「중대재해처벌법」 제5조(도급, 용역, 위탁 등 관계에서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)
- 나. 「중대재해처벌법」 제9조(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)
- 다. 「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」 제4조(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 조치)
- 라. 「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」 제10조(공중이용시설·공중교통수단 관련 안전보건 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에 관한 조치)

3. 내 용

- 가. 과업수행자” 는 사천바다케이블카 에스컬레이터 핸드레일 교체 공사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안전·보건 관계법령 및 「중대재해처벌법상」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고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·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사천시시설관리공단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.
- 나. 과업수행자” 는 종사자 및 이용자 등으로부터 유해·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·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, 사천시 시설관리공단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한다.
- 다. 사업수행에 필요한 작업, 점검 등 모든 작업을 할 때에는 철저한 안전 대책을 수립한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하며, 안전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과업수행자의 책임하에 후속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.
- 라. 중대재해 발생 시 선보고 후 사고처리 하여야 한다.

4. 제출자료

- 가. 수급업체 선정 평가표
- 나. 안전보건관리계획서
- 다. 안전보건관리준수서약서
- 라. 안전보건 체크리스트
- 마. 작업 전 안전미팅 일지
- 바. 근로자 서약서

1 [계약체결전] 수급업체 선정 평가표 작성

계약명

평가일

업체명

평가자

구분	배점	득점
합계	100	
A. 안전보건관리체계	20	
B. 실행수준	40	
C. 운영관리	20	
D. 재해발생 수준	20	

평가항목 및 기준

평가항목	평가기준	배점	득점
A. 안전보건관리체계	소개	20	
1. 일반원칙	◆ 도급,수급인의 안전보건경영방침 적정여부	5	
2. 계획수립	◆ 산업재해예방 활동에 대한 수급인의 이행계획 적정 여부	10	
3. 역할 및 책임	◆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 분담 (본사, 현장)	5	
B. 실행수준	소개	40	
4. 위험성평가	◆ 도급작업의 위험성평가 결과에 대한 이해수준 및 자체 유해 • 위험요인 평가수준	5	
5. 안전점검	◆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 (보호구 착용확인 포함)	10	
6. 이행확인	◆ 안전조치 이행여부 확인 (도급업체의 지도조언에 대한 이행 포함)	10	
7. 교육 및 기록	◆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	5	
8. 안전작업허가	◆ 유해 • 위험작업에 대한 안전작업허가 이행수준	10	
C. 운영관리	소개	20	
9. 신호 및 연락체계	◆ 도급 / 수급업체간 신호체계, 연락체계	5	
10. 위험물질 및 설비	◆ 유해 • 위험 물질 및 취급 기계 • 기구 및 설비의 안전성 확인	10	
11. 비상대책	◆ 비상시 대피 및 피해최소화대책 (고용부, 소방서, 병원 포함)	5	
D. 재해발생 수준	소개	20	
12. 산업재해현황	◆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 현황	20	

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

본인은 귀 기관의 _____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.

「산업안전보건법, 중대재해처벌법」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.

예 ()

아니오 ()

(업체명)는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,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,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.

2023년 월 일

주 소:

업체명:

대표자: ○ ○ ○ (인)

사천시시설관리공단 이사장 귀하

4

공사(용역) 안전보건 체크리스트 작성

공사(용역) 안전 · 보건 체크리스트

연번	점검내용	점검결과	
		예	아니오
1	담당자는 과업지시서 또는 계약서에 ‘안전관리 및 예방조치 후 작업’ 실시 내용을 포함하였습니까? ※계약서가 없는 경우 본 체크리스트로 갈음		
2	담당자는 공사(용역)업체가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였는지 확인하였습니까?		
3	담당자는 공사(용역)업체에 안전보호구(안전모, 안전대, 안전화 등)를 착용하고 작업하도록 주지시켰습니까?		
4	담당자는 공사(용역)업체에 위험사항과 공사 전 유의사항에 대해 안내하여 주지시켰습니까? (위험성평가 열람 또는 제공 등)		
5	담당자는 공사(용역)업체에 공단의 현장(업체 근로자가 작업하는 공간)으로 이동할 때나 현장 이외 장소 이동 시 담당자의 안내를 받도록 주지시켰습니까?		
6	담당자는 공사업체와 안전보건관리에 관한 사항에 대해 협의 · 조정했습니까?		

※ 해당 항목이 없으면 점검결과에 “해당없음” 표기

A/S 등 1회성 작업의 경우에서 반드시 체크리스트 확인

공사(용역) 업체 확인 서약서

사천시시설관리공단으로부터 위 점검항목에 대하여 안내(주지)받은 사실이 있으며, 공사(용역) 전 과정에 걸쳐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적절한 보호구를 지급(착용)하는 등 안전수칙을 준수하며 작업을 실시할 것을 서약합니다.

소속(회사):

공사(용역)업체 책임자:

(서명)

5

[1회성 작업] 작업 전 안전미팅 일지 작성

작업 전 안전 미팅 일지

결 재	담당자	팀장

팀 명			
작업내용			
작업장소			
유해·위험 요소(중점위험 포함)		조 치 여 부	주의사항
안전점검 체크리스트		점검결과	조치사항
필요한 보호구(안전화, 안전모, 안전장갑 등)를 지급·착용하는가?		<input type="checkbox"/> 예 <input type="checkbox"/> 아니오 <input type="checkbox"/> 해당없음	
작업구역의 넘어짐, 떨어짐 등을 위험장소를 인지하고 있는가?		<input type="checkbox"/> 예 <input type="checkbox"/> 아니오 <input type="checkbox"/> 해당없음	
작업 시 유해·위험요인 및 작업방법을 잘 숙지하고 있는가?		<input type="checkbox"/> 예 <input type="checkbox"/> 아니오 <input type="checkbox"/> 해당없음	
용도에 맞는 작업도구를 선택하고 사용 전 점검하는가?		<input type="checkbox"/> 예 <input type="checkbox"/> 아니오 <input type="checkbox"/> 해당없음	
주기적으로 스트레칭을 실시하는가?		<input type="checkbox"/> 예 <input type="checkbox"/> 아니오 <input type="checkbox"/> 해당없음	
- 이하 작업 특성에 맞는 내용 -		<input type="checkbox"/> 예 <input type="checkbox"/> 아니오 <input type="checkbox"/> 해당없음	
		<input type="checkbox"/> 예 <input type="checkbox"/> 아니오 <input type="checkbox"/> 해당없음	
참석자	소 속	직 급	성명
기타사항			

